

수소용품 제조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4일
신고인	상호		
	대표자	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)	
	사무소 소재지	전화번호	
신고 세부 내용	사업의 종류		
	허가 번호	허가 연월일	
	사업소 소재지		
	지위 승계 내용	[] 상속 [] 양수 [] 합병 [] 그 밖의 것	
	지위 승계 연월일		

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
·시장·군수·구청장

귀하

신고인 제출서류	1.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1부 2. 계약서 사본, 상속·경매·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,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 인을 말합니다)	

처 리 절 차

신고서 작성	➔	접수	➔	검토·확인	➔	결재	➔	통보
--------	---	----	---	-------	---	----	---	----

신고인

처리기관: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구 (수소 업무 담당 부서)

행정처분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 업소 확인서

1.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별표 6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(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)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.

가.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

처분받은 날	행정처분 내용	행정처분 사유

나. 행정처분 절차 진행사실

적발일	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위반행위	진행 중인 내용

- 1)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받은 날■에 "없음"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.
- 2)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,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행정처분 내용을 수정하게 해야 합니다.

2. 양수인은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제5항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양도인 성명

(서명 또는 인)

주소

양수인 성명

(서명 또는 인)

주소